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0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이개호
김문수 · 최혁진 · 김우영
문정복 · 조계원 · 소병훈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입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공직 퇴임일, 제공한 자문 및 고문내역을 포함한 업무활동내역, 보수
제117조제1항 중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11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생략)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공직퇴임일, 제공한 자문 및 고문내역을 포함한 업무활동내역, 보수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 1.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	---